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9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서지영·박수민·김대식

박충권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이헌승 • 곽규택 • 정동만

서천호 · 정성국 · 조정훈

유영석 · 김용태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 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방송법」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,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·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 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·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 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"청소년유해정보"를 "아동·청소년유해정보"로, "청

소년보호책임자"를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"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·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"청소년보호책임자의"를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청소년에게"를 "아동 및 청소년에게"로, "청소년유해정보"를 "아동·청소년유해정보"로, "청소년을"을 "아동 및 청소년을"로, "청소년보호책임자"를 각각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본문"을 "제1항에 따라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"로, "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"을 "지정된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"로, "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"을 "지정된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 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을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으로, "청소년보호와"를 각각 "아동 및 청소년보호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중 "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을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으로, "청소년유해정보를"을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들"을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의 "하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의 "하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의 "하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"의 "하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를"을 "하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청소년보호책임자의"를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의"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 중 "청소년보호책임자를"을 "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청소년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9조의2(아동・청소년보호책임 제9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 자의 지정 등) ① -----정 등)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 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의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 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 동 및 청소년에게-----<u>년유해정보</u>"라 한다)로부터 <u>청</u> -----아동・청소년유해정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 -----아동 및 청 년보호책임자(이하 "청소년보 소년을----아동 ·청소년보호책임자----아 호책임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 야 한다. 다만, 「정보통신망 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-----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 -----제1항에 문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 따라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-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

우에는 <u>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</u> <u>자를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③ <u>청소년보호책임자는</u>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<u>청소년보</u>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(부서의 장에 해당하 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<u>청소년보호와</u>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) 중에서 지정한다.
- ④ <u>청소년보호책임자는</u>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 비스의 <u>청소년유해정보를</u> 차단 ·관리하는 등 <u>청소년보호업무</u> 를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<u>청소년보호책임자</u> 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<u>지정된 아동·청소년보호책임</u>
자 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
③ <u>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</u> -
<u>아동</u>
및 청소년보호와
<u>아동 및 청</u>
소년보호와
④ <u>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는</u> -
<u>아동·청소년유해</u>
<u>정보를아동</u>
및 청소년보호업무를
⑤ <u>아동·청소년보호</u>
<u>책임자의</u>
∥3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아니한 자
- 2. ~ 9. (생 략)
- ③ (생 략)

②
<u>.</u>
1
<u>아동·청소년보호책임자를</u>
2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